

외부공공시설 사용책임 지침

제 정 : 2005. 8. 16.
개 정 : 2012. 6. 1.
개 정 : 2013. 9. 1.
개 정 : 2025. 8. 1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교육목표 및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할 뿐 아니라 건강한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금강대학교의 외부공공시설(체력단련장, 다목적구장)에 대한 시설 현황 및 관리, 책임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테니스장 운영

제2조(시설) 삭제

제3조(관리) 삭제

제4조(운영) 삭제

제3장 체력단련장 운영

제5조(시설) 삭제

제6조(관리) ① 체력단련장의 모든 사용책임은 기숙사 총사감으로 한다.

② 체력단련장 기구 보수 및 구입/이동이 필요할 시는 기숙사에서 기획관리처(경영지원팀)로 협조 요청한다.

제7조(운영) ① 체력단련장 사용시간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.

② 체력단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숙사(야간에는 야간경비)의 허가를 얻어 2인 이상의 입회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.

③ 체력단련장은 원칙적으로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.

④ 재학생 이외의 외부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숙사 총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⑤ 체력단련장 사용자는 소정의 사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⑥ 체력단련장 사용자는 기구 사용 후 원상태로 정리하여 놓아야 한다.

⑦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는 일체 사용을 불허한다.

제4장 다목적구장 운영

제8조(시설) 다목적구장 내에 다음 각 호의 다음 시설/장비를 둔다.

1. 배구네트: 1개

2. 배드민턴네트(족구네트): 1개(1개)
3. 농구골대: 3개
4. 그늘막 벤치(파고라):2개
5. 면적: 1,800㎡

제9조(관리) ① 다목적구장 내의 시설사용책임은 교학지원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5. 8. 1.>

② 다목적구장 운영상 아래와 같은 책임 직원을 둔다.

1. 수업중 사용 책임은 수업담당교수로 한다.
2. 일반 사용 책임은 교학지원처(교학팀) 담당자로 한다. <개정 2025. 8. 1.>
3. 근무 이후 사용 관리는 야간경비에 의뢰한다.

③ 다목적구장은 정기적으로 청소/관리 한다.

④ 시설보수 의뢰는 원칙적으로 기획관리처(시설관리팀)에 한다.

⑤ 기타 정해지지 않은 다목적구장 사용 관리는 교학지원처(교학팀)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5. 8. 1.>

제10조(운영) ① 학과 수업시간(09:00-18:00, 월-금)중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.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② 재학생 및 교직원 외의 외부일반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책임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③ 어떠한 경우라도 자전거, 오토바이 등 용도이외의 기구를 타거나 사용할 수 없다.

④ 다목적구장 내에서 안전관리사고가 발생했을 시 모든 형사, 민사상의 책임은 그 시간 담당교수가 지며 수업이외의 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진다.

⑤ 다음 각 호와 같은 다목적구장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일체 출입을 엄금하고 퇴장을 명한다.

1. 삭제
2. 음주자의 출입 및 고성방가를 금한다.
3. 모든 출입자는 담당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1. 본 지침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테니스장, 헬스장, 다목적구장 등 사용 책임부서장을 포함한 보직교수회의에서 결정·시행한다.

2. 본 지침은 2005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